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1245) 제안설명

-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!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.동료 위원님 여러분!
송파 제2지역의 남 창 진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이 개정안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 기존 도심의 범위를 확장하고 이에 따른 용적률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, 도시를 ‘4대문안’에서 ‘한양도성과 그 일부지역을 포함하는 지역’으로 확대하여 “한양도성 역사도심”으로 명명하고, 도시에 신규 포함된 상업지역과 주거복합건축물의 용적률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
- 이는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되 도시에 추가 편입된 지역의 용적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